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가설물

<기술의 요지>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지하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를 막고, 인접 도로와 주변 건물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CW(Soil Cement Wall) 교반체 내부에 강재블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재주열벽은 SCW와 강재블록에 의한 이중의 차수·방수기능과 휨강성 증대 효과로 인해서 도심지 지하굴착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영구 철골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설치함으로써 부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 시공성 개선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해가며 지하를 굴착하는 무가시설 Top-down 방식의 가설공법이므로 기존 기술에 비해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향상시킨 공법

<범위>

지하 굴착을 위한 SCW 교반체 내부에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이형철근망을 삽입하고 블록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 양생함으로써 강재주열벽을 조성한 이후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한 무가시설 Top-down 방식의 지하건축물 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동현), ② 남경건설(주)(최정필),  
③ 케이에스엠기술(주)(홍현표), ④ 백양엔지니어링(주)(최동하)

나. 전화번호 : ① 070-4667-6886, ② 062-457-2000, ③ 031-420-8398, ④ 02-409-7373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시멘트의 양과 라텍스 사용량을 줄이고 강도 및 내구성 등 공학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초속경시멘트와 개질라텍스를 사용하여 시멘트콘크리트의 성능을 개량하였다. 또한 바닥판 슬래브 열화부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틸팅 기술 도입, 별도의 추가 인력과 장비 없이 측면부 및 구조물부의 열화부 제거가 가능하고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개발하여 정밀성과 안전성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범위>

개질라텍스와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초속경시멘트를 이용한 시멘트콘크리트 제조 기술과 틸팅 및 측면 절삭 기능,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유지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